

예 산 총 칙

2015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05,856,744	21,175,702
일반회계		680,908,084	20,427,243
특별회계		24,948,660	748,460
기타특별회계		24,948,660	748,460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99,530	8,986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20,533,571	616,007
	수질개선 특별회계	68,076	2,042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868,996	26,070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658,021	19,741
	주차장 특별회계	2,410,912	72,327
	기반시설 특별회계	85,729	2,572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23,825	715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와 같다.

제 3 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는 5,675,655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인건비는 타 비목으로 이용할 수 없다.

1.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2. 재해대책 및 복구비